

의안번호	2216032
의 퇴 인	서왕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7.
추계번호	26C0084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법률 제21260호 안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·직무 및 근속 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법률 제21260호 안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3항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·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(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)는 해당 기준을 준 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3	법률 제21260호 안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4항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, 보수·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, 표준보수·복리후생 기준의 준수율,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 여야 함 ※ (현행법)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,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,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4	법률 제21260호 안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1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표준 보수·복리후생 기준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 법인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 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~4	법률 제21260호 안 제3조(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2항~제4항·제12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실태 및 준수율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, 사회복지법인의 해당 기준 준수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”을 제시하고 있으며, 현행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 -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.5%, 지방이양시설이 106.2%(실태조사 준수율 = $\sum$ 개인별 보조금 기본급 / $\sum$ 가이드라인상 해당 직급 및 호봉 기본급)
 - 향후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복리후생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외 소득금액이 확대될 수 있고, 이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국가가 정할 사회복지사의 복리후생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고, 개정안 시행 시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게 될 금액도 알 수 없음
 - 안 제3조제3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보수·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향후 결정될 표준 보수·복리후생 수준을 알 수 없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